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관내 통장자녀중 품행히 단정하고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던 통장자녀 장학금을 통장연합회를 비롯한 다수 통장의 건의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폐지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4. 검토의견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되어 오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제도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통장 역할의 축소와 통장 활동수당 인상 등으로 시행의 필요성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통장 상호간 위화감조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통장연합회 회장단을 비롯한 다수의 통장들이 장학금 지급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 본 폐지조례안은 가결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2008. 2. 19.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선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카 (생략)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참 고 자 료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단위 :원)

구분	계		고등학생		중학생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2005년	56	60,292,800	36	56,476,800	20	3,816,000
2006년	25	27,445,200	16	25,728,000	9	1,717,200
2007년	23	28,186,000	16	26,767,600	7	1,418,400